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외사용과 산학협력단에 대한 연

구비 환수 범위 : 대구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구합20274 판결



대학 연구실의 비용공동관리 등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된 교수의 책임과는 별개로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환수범위가 자주 문제됩니다. 그 구체적 범위 확정과 액수 산정에 관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좋은 참고자료라고 생각되므로 첨부한 판결문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산학협력단 방어논리 - 주장요지

산학협력단 법인이 소속 교수들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상의 모든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점, 산학협력단 법인이 정부출연금 중 적접비만 교수에게 지급하고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의 관리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는바, 이러한 간접비까지 환수하는 것은 부당한 점, 교수가 편취·유용하지 않은 연구비와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제외

하면 연구비 부정사용 비율이 20~40%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학협력단 법인에 대한 이 사건 출연금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결요지

산학협력단 법인이 출연금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 그 중 직접비만 교수에게 지급하고, 간접비는 산학협력단 법인의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간접비 또한 각 과제의 수행을 목적으로 원고 법인에게 지급된 금원에 해당하고, **출연금 환수처분에 있어서 간접비를 제외하여야 할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간접비를 포함한 출연금 전부를 환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산학협력단이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참여연구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산학협력단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세액 상당의 돈이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업비의 집행 단계에서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거래금액과 함께 집행되므로, 해당 세액의 처리에 대해서는 정산단계에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역시 부** **정사용한 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인건비 이외의 연구활동비,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가 모두 교수의 용도 외 사용금액에 포함됨을 전제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하고, 개정된 것은 고시번호로 특정한다)에서 정한 출연금 환수기준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산학협력단은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서 소속 연구책임자가 사업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총괄책임자인 교수 B가 사업비 사용실적을 허위로 작성·보고하는 것을 별다른 점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각 과제의 수행주체로서의 관리·감독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행정심판소송, 이의신청,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기술료, 모인특허, 법률자문,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